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84125 판결 [사해행위취소]

재판경과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 25 선고 2021나26801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8 선고 2020가단5084125 판결

전문

원 고 A 유한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C

변 론 종 결 2021. 3. 25.

판 결 선 고 2021. 4.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와 소외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9. 20. 체결한 협의분할계약을 11,415,536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415,536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판결확정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D은 2007.경 C의 채권을 E 유한회사에, E 유한회사는 2009. 9. 3.경 주식회사 F에, 주식회사 F은 2010. 4. 22. 원고에게 각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C를 상대로 위 양수금에 대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4. 9. 2. 이 법원 2014차전201596호로 지급명령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4. 12. 20. 확정되었다.

다. G는 1997. 6. 1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그곳에서 살다가 2016. 10. 21. 위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2,000,000원, 근저당권 H 주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G는 2017. 9.경 사망하였고, 상속인인 배우자 I, 자녀 C, J, 피고는 피고가 망 G의 재산인 이 사건 주택을 단독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라.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마. 이후 B은 2018. 1. 11.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2017. 9. 20.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18. 2. 8. 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104,000,000원, 근저당권자 K조합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에 대한 판단

C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할 당시 원고가 C에 대하여 이 사건 양수금 채권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에서 본 것과 같으므로, 위 양수금 채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C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가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던 C가 피고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함으로써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주택 중 자신의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이전하여 준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아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C의 재산 상태와 채무액 등에 비추어 볼 때 채무자인 C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하여 원고를 포함한 일반채권자들을 해한다는 사정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익자인 피고도 위와 같은 사정을 알고 있었다고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과 갑 제2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 사실에다가 ① C가 피고의 누나이기는 하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당시 50대의 중년으로 각자 독립적인 경제활동 내지 생활관계를 영위하여 C가 이 사건 양수금 채권과 같이 다수의 채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등 구체적인 재산상태에 대하여는 피고가 알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주택은 망 G가 1997. 6. 11.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 그곳에서 생활하였고, 망 G 사망 이후 배우자인 I이 계속 거주하는 주택으로, 망 G의 상속인들이 거의 유일한 상속재산인 이 사건 주택에 관하여 형식상 상속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하였지만 그 실질은 장남인 피고가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여 I을 부양하면서 그 소유권을 가지고 C를 비롯한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을 포기하는 내용으로도 볼 여지가 있는 점, ③ 피고는 C로부터 채무 변제를 요청받고 C로부터 전달받은 채권자 명단에 따라 그 채권자들의 금융기관 계좌로 채무 상당액을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C의 상속지분을 훨씬 초과하는 대가를 지불하였는바, 피고는 이로써 누나인 C의 채무를 정리하였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가 2018. 2. 9. 하루 동안 C의 채무 합계 36,600,000원을 직접 변제하면서까지 원고 주장과 같이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를 할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더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로써 수익자인 피고에 대한 악의의 추정은 반복되었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가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있는 원고의 주장은 나아가 살필 것도 없이 이유 없다.

① 망 G(L생)은 배우자 I(M생)과 사이에 C(N생)와 피고(O생), J(P생)을 두었다.

② 망 G의 상속인들은 2017. 9. 20. 피고가 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무 40,174,858원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시가 116,000,000원²⁾ 상당의 이 사건 주택을 피고의 단독소유로 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였다. 이로써 C는 약 16,850,031원{75,825,142원(116,000,000원 - 40,174,858원) × 2/9 지분} 상당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상속지분을 포기하였다.

③ 한편 피고는 C로부터 다수의 채무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를 직접 변제하기 위하여 C로부터 채권자, 채무액, 계좌번호 등이 기재된 채권자 명단을 받았다.

피고는 2018. 2. 8. 이 사건 주택에 관한 H 주식회사의 근저당권부 채무 40,174,858원을 변제하고 그 다음 날인 2018. 2. 9. C의 채권자 Q에게 12,000,000원, R에게 13,000,000원, S에게 3,000,000원, T에게 5,000,000원, U에게 1,000,000원, V에게 1,500,000원, W에게

1,100,000원 합계 36,600,000원을 송금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박희근

[별 지 록 록]

부동산의 표시

1동의 건물의 표시

부산광역시 동래구

[도로명주소]
부산광역시 동래구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건물 번호 :
구 조 : 월근콘크리트조
면 적 : 73.18㎡

대지권의 표시

도지의 표시 : 1. 부산광역시 동래구 대 695.1㎡
대지권의 종류 : 1. 소유권대지권
대지권의 비율 : 50510분의 3754

- 이 상 -

- 7 -

1) 피고는 2019. 2. 1.경 이 사건 주택으로 전입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주택의 시가를 감정하지 아니하고 2019.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당액인 109,000,000원을 주장하나, 이 사건 주택의 시가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가까운 2018. 1. 1. 기준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당액인 116,000,000원으로 본다.